

#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122호
- 나. 발 의 자 : 이종환 의원
- 다. 발의일자 : 2022년 03월 10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03월 16일

### 2. 제안이유

-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, 여가선용, 유대관계 형성 등의 순기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불 때 체육활동의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. 이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견고히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제6의2호 신설)
- 나.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16조제1호의2 신설)

#### 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‘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’을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견고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##### 나.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 현황

- 현행 「국민체육진흥법」과 「생활체육진흥법」을 근거로 ‘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,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도하기 위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·운영’하고 있음.
  - 생활체육지도자는 시민의 적극적 체육활동을 유도하고자 주민센터, 체육시설, 경로당 등 ‘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’를 지원하고 있음.
- 2022년 기준 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452명으로 일반 178명, 어르신 159명, 유소년 6명 및 장애인 109명이 각각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음.

<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현황>

구분 (명)	장소	지도대상
계 (452명)		
일반지도자(178명)	공공체육시설, 복지시설, 자치센터, 중·고등학교 등	전 연령
어르신지도자(159명)	경로당, 노인복지관, 양로원 등	만 65세 이상
유소년지도자(6명)	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, 초등학교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아동시설 등	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
장애인지도자(109명)	주간보호센터, 작업보호장, 복지관, 특수학교, 공공체육시설 등	전 연령

-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뉴딜일자리의 일환인 계약직 신분으로 기본급을 국비·시비(일부 자치구 구비 매칭)<sup>1)</sup> 매칭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지도활동수당, 휴일근무수당, 교통비, 정액급식비 등을 시비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.

### <일반·어르신·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급여현황>

2022. 3월 현재 (단위: 원)

구분	금액	비고	
<b>총 금액</b>	3,065,600	-휴일근무수당 및 근속수당 최대금액 반영 시	
<b>기본급여</b>	급여	2,082,000	-
	법정부담금	388,000	-
<b>수당 (시비)</b>	현장지도 활동수당	30,000~ 100,000	- 3년차이상 : 3만원/월 - 5년차이상 : 5만원/월 - 7년차이상 : 7만원/월 - 10년차 이상 : 10만원/월
	휴일근무수당	265,600	- 월 최대 16시간/ 시간당 16,600원 - 휴일 근무에 따른 해당자에 한해 지급
	교통비	100,000	-
	정액급식비	130,000	-

### <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급여현황>

2022. 3월 현재 (단위: 원)

구분	금액	비고	
<b>총 금액</b>	3,062,400	-휴일근무수당 및 근속수당 최대금액 반영 시	
<b>기본급여</b>	급여	2,082,000	-

1) 현재 인건비는 국비(50%)+시비(50%)에서 국비(50%)+시비(25%)+구비(25%)로 개선중이며 자치구별 최소 74백만원에서 최대 134백만원이 분담될 예정임. 제수당(현장지도 활동수당, 휴일근무수당, 교통비, 정액급식비)4종은 기존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원할 예정임.

	법정부담금	388,000	-
수당 (시비)	휴일근무수당	262,400	- 월 최대 16시간/ 시간당 16,400원 - 단, 실 근무에 따른 해당자에 한해 지급 - 서비스팀장 및 행정지도자 제외
	근속수당	30,000~ 100,000	- 3년차이상 : 3만원/월 -5년차이상 : 5만원/월 - 7년차이상 : 7만원/월 -10년차 이상: 10만원/월
	교통비	100,000	-
	정액급식비	130,000	-
	초과근무수당	-	- 서비스팀장 월 최대 30시간/ 시간당 17,720원 - 행정지도자 월 최대 30시간/ 시간당 16,590원

- 실상 생활체육지도자는 자치구별 주민 수요에 따른 생활체육 현장지도를 주 업무로 하는 기초 자치단체 사무로 자치구체육회 소속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, 수당에 대한 지속적인 시-구 재원분담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.
- 한편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 요구에 따라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가이드라인('20년 8월)을 근거로 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당사자·전문가 TF에서 「정규직 전환 심의위원 표준안」을 마련('21년 10월)하였음.

### <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 절차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표준(안) : 전환심의 기관(시체육회), 평가 기준(근무평가70, 활동평가 20, 면접10)</li> <li>- 전환절차</li> </ul>			
정규직 전환심의표준(안) 배포 및 전환 채용 신청	생활체육지도자 면접평가	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환 심시 실시	생활체육지도자 근로계약서 작성

- 자치구체육회별 생활체육지도자 면접 및 시체육회 주관의 정규직전환 심의회 개최를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임.

다. 생활체육지도자 용어 등 신설(안 제2조제6의2호, 안 제16조제1의2호 )

- ‘생활체육지도자’ 라는 정의규정은 「생활체육진흥법」<sup>2)</sup>의 용어를 준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6. (생 략) 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div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 6. (현행과 같음)  6의2. “생활체육지도자”란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.

- 안 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에서 시장이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할 근거를 명문화함.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  1. (생 략) 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div> 2. ~ 7. (생 략)	제18조(생활체육의 진흥) ----- ----- ----- -----.  1. (현행과 같음)  1의2.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 2. ~ 7. (현행과 같음)

라. 개정의 타당성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는 ‘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·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’ 를 규정하고 ‘체육지도자 육성’ 을 의무화

2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“생활체육지도자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.

하고 있음.

또한 「생활체육진흥법」에서도 ‘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책무’를 명시하고 있어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타당성이 있음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▲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▲기본급여 인상 및 휴일근무수당 기준단가 현행화 ▲지도강습 활동복 지급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정적,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임.
- 한편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<sup>3)</sup>에 따르면 전국 만 10세 이상 국민 9천명 중 주 1회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은 60.8%로 전년 대비 0.7% 증가하였으며 전국 만 10세 이상 60세 이하 등록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은 20.2%로 전년 대비 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체육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일반 20~30대 국민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자료, 운동 어플 등을 사용한 수치가 반영되는 반면, 중장년 층과 노인층, 장애인의 경우 대면 체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들의 정신적·육체적 건강 증진, 여가선용 등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 측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.

담당 조사관	박지혜 2180-8117
전문위원	임창균 2180-8114

3) 국민생활체육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년 10월부터 21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임.

**의안번호  
3122**

**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	제 안 자	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
		이종환 시의원		2022.3.10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<p><b>&lt;개정 필요성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1.3.25. 제정되어 시행 중인 '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을 명시</li> </ul> <p><b>&lt;주요 입법 요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용어 정의</li> <li>○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</li> </ul>		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2.3.10. 이종환 의원 발의</li> <li>※(찬성) 경만선, 김춘례, 김태수, 김태호, 김혜련, 노승재, 박기열, 박순규, 안광석, 황규복 (10명)</li> </ul>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 ) / 수정가결 ( ) / 부결( ) / 보류( 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용어 정의 제2조제6호의2 신설(원안 가결)</li> <li>○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육성과 지원 명시(원안 가결)</li> </ul>				
담당부서	체육진흥과	팀장	김은영(☎2133-2732)	담당	양윤미(☎2133-2733)